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
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

2016년 2월 5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감사기준」 및 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」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감사(감찰 포함)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구 소속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.
2. “산하기관”이란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.
3. “경고 등 처분”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주의, 훈계 및 경고(기관 및 부서 경고를 포함한다) 처분을 말한다.

제4조(처분대상 및 종류)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구 소속기관과 구

소속 모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·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처분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고 : 기관장에게 적용한다.

2. 기관경고·부서경고 : 구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.

3. 주의·훈계 :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, 훈계는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적용한다.

제5조(처분의 효력) ① 기관장 경고, 기관 및 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주의·훈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, 성과상여금의 지급 및 표창 등 인사관리와 그 밖의 수혜적 조치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제6조(처분사유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등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
2.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

3.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았을 때

4.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

5.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

6. 기관(부서)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

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

7.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(부서)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

제7조(처분권자) 제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. 단, 주의 또는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처분방법)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.

제9조(기록유지)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주 의(훈 계·경 고)장

소 속

직 위 (급)

(성 명)

(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)

20

처분권자

(직인)

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“공무원 경고 등 처분제도”의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처분 대상 규정 (제3조 ~ 제4조)
- 나. 처분 종류 및 기준 명시 (제4조)
 - 경고
 - 기관경고·부서경고
 - 주의·훈계
- 다. 처분의 효력 규정 (제5조)